

2022년도 제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1. 24.(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이성엽, 송수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8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653건(안건번호 제2022-3971호~458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3971호(순번 1번)는 미술저작물의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공정이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합법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체위원회의 확립된 입장과 비교하였을 때 가결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3972호(순번 2번)는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 판매 목적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저작물의 합법 시장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3973호~3975호(순번 3번~5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암호화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나, 현재 저작권 침해 상태가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3976호~4004호(순번 6번~34번)는 블로그 및 카페에

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4005호~4051호(순번 35번~81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1,54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406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2022-1630호~203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에 접속할 수 있는 406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4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8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6쪽의 사이트명, 게시물 내용, 게시물명, 7쪽의 사이트명, 8쪽의 사이트명, 저작물명, 9쪽의 게시물 내용, 게시판명, 10쪽의 게시판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제1호 안전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사이트명, 게시물

내용, 게시물명, 게시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 결과 제한 심의 부분인 13쪽~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6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65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에서 권리자의 미술저작물 이미지 파일과 작가 정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해당 저작물의 전시 관련 정보를 제시하면서)해당 미술저작물은 화가 △△△의 작품(이하 '원저작물'이라 함)으로, △△△△△△△이 개

최한 ‘△△△△ △△△△△△, △△△△△ △△ △△△ △’의 출품작
임. 소유권 양도 등의 사정에 대하여서는 검색 및 주어진 자료를 통
하여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을 이미지
파일(이하 ‘심의대상 이미지’라 함) 형태로 제공하면서, 작품명, 아티
스트 등 원저작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순번 1번과 네이버 미술백과를 비교하며 보여주면서)해당 정보는
네이버 미술백과에서 제공 중인 내용과 동일하며, 심의대상 게시물
과 네이버 미술백과 모두 이미지의 출처를 ‘△△△△△△△’으로 밝
히고 있음. 다만, 현재 해당 미술관 웹사이트에서 심의대상 이미지
및 관련 정보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며, 전시 당시에 제공되었던 정
보를 확보하였다가 이를 활용 중인 것으로 보임. 다만, 원저작물과
관련한 정보의 경우, 단순한 사실의 제공으로 보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하 내용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해당 판매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더불어 심의대상 게
시물에서는 여러 가지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저작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종의 취향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임(이하 ‘해당 링크 서비스’라 함). 다
만, 해당 링크를 통하여 접속한 웹사이트 중 원저작물 내지 심의대
상 이미지, 혹은 이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 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권리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정이용 등의 사정을 검토해야 함. 심의대
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이용 중이나 원저작물을 소개
하거나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 중
인 바 미술저작물의 보편적인 이용 목적과는 상이하다고 할 것이며,
심의대상 이미지는 썸네일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실질적 감상이 불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 따라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사실이 있는 심의대상 이미지를 비롯하여 해당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삭제되는바, 보호원이 웹페이지 전체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음.

더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전체위원회는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침해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보호원에 신고하게 된 점, 해당 웹사이트의 특성상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적 대응 등 대체적 수단을 통한 침해 구제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하였음. 해당 사안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민원인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침해 구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전체위원회 사안과 같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공정이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합법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체위원회의 확립된 입장과 비교하였을 때 가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해당 사이트는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홈페이지 내의 회사 및 서비스 소개 페이지로 이동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사이트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한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영화, 여행, 뷰티 등으로 구성된 16개 카테고리를 자동 운영하고 있음.
(해당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 웹툰 등 다양한 정보를 차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과거 본 안전과 동일한 유형의 플랫폼에 대한 안전이 있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사이트는 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심의 요청되었으며, 유사한 플랫폼에 대한 심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D 위원: 구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결과로 나온 이미지와 차이점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구글의 경우는 개별 게시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한 개별 게시물을 취합하여 노출하고 링크로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라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AI 기술을 통하여 직접 게시 중인 사안임. 전자의 경우 해당 게시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전송하는 데에 대한 개별적인 이용허락이 문제가 된다면, 심의

대상 게시물의 경우 AI 기술을 통한 포괄적인 복제 및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의 문제임.

- D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수동으로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라 AI가 크롤링하여 해당 사이트에 자동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임.
- B 위원: 구글 검색창의 경우는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와 연관성 있는 결과가 검색됨.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경우는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 매칭하여 결과를 노출하는 구조로 보임. 해당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회사의 솔루션 광고가 주목적인 것으로 추측됨.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사이트의 검색창에 '장동건' 입력 후, 검색결과를 제시하면서)검색 키워드인 배우 장동건과 연관된 검색어를 차트 형식으로 제공하며, (장동건 이미지를 클릭하여 보여주면서)해당 배우의 성별, 생일, 소속사, 활동 기간, 관련 뉴스 등 기본정보가 순차적으로 게시되어 있음.
- D 위원: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해당 사이트에서 미술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D, B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2021. 12. 30. “△△△△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하여 미국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DVD판 영상의 일부과 VHS를 디지털화한 영상의 일부, 영화 소개 및 영화 구매 방법 안내, 파워 링크로 이루어져 있음. 각 영상은 영화 전체 분량(약 86분) 중 일부(약 7분)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물 파일의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동시에 마케팅 효과를 누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채증일인 2022. 1. 18. 기준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라는 공개 댓글이 달려 있었고, 게시자는 해당 댓글에 1초 간격으로 3개의 비밀댓글을 달았음. 해당 댓글은 검토일인 2022. 1. 20. 기준 삭제되었음.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게시자는 직접 VHS를 디지털화하여 맛보기 영상을 제공하고, 댓글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자에게 댓글로 구매 안내를 한 뒤, 거래가 성사되면 댓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저작물의 합법 시장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판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블로그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블로그는 '△△△△△', '△△△△△', '△△△△△', '△△△△△'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 카테고리에 게시되어 있음. '△△△△△'에서는 게시자가 소유 중인 저작물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음.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된 기타 게시물을 보면, 영상 오른쪽 상단에는 게시자의 닉네임 및 블로그의 워터마크가 있으며, 영상 하단에 "△△△△ △ △△△ △△ △△△△△△△를 △△△△△△△△, △△△△ △△△ △△△△△△△ △△△ △△△△△△△△△△, △△△△, △△ △ △△ △△ △△△△ △△ △ △△△△△△ △△△△ △△△△△ △△△△△"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고 있음.
- A 위원: '△△△△△' 게시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의 수가 상당함. 일종의 사업적 성격을 띠고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저작물의 합법 시장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5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 △△△△ 링크를 암호 형태로 게시한 사안임. 총 3개 게시물임.

(순번 3번 아카이브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예고편의 기능을 하는 1~2분 분량의 영상물과, 암호화된 링크, 게시자가 과거에 동일한 형태로 작성한 커뮤니티 사이트 내 게시물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암호를 '△△△△△△△△△△△△'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 항목에 △△-△△△△ 주소가 현출됨.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 파일을 다운로드할 있으며, 해당 파일 내에 해당 저작물의 암호화된 링크를 포함 다수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음. '△△△△△△△△' 파일에서 제공 중인 암호를 '△△△△△△△△△△△△'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 항목에 △△ △△△△ 주소가 현출되고,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불법 복제된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음.

한편 심의위원회는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원천 게시물에 대하여,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사안의 경우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

되어 있는 바, 링크를 제공 중인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동일한 형태의 사안에 대하여, 2022. 1. 4. 개최 제2022-1회 2분과위원회 및 2022. 1. 12. 개최 제2022-2회 3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다만, 2022. 1. 20. 기준 심의대상 게시물은 삭제되어 현존하지 않음.

종합하면, 게시자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로서, 심의대상 게시물 중 암호화된 링크는 시정권고의 대상성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암호화된 링크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나, 현재는 저작권 침해 상태가 모두 해소되어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A, C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5번은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34번은 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카페에서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 및 불법복제물을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55개 게시물임.

(순번 6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531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일 기준 비공개 블로그로 전환된 상태임.

(순번 1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1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 중임.

(순번 12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4화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일 기준 비공개 글로 전환된 상태임.

순번 일부의 경우 2022. 1. 20. 현재 블로그 이용자에 의하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으나,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음.

한편, 순번 8, 9, 26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 자체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었는데, 해당 블로그가 △△△ 이용약관 또는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 측에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이 경우에도 블로그가 삭제 또는 폐쇄된 것이 아니라 접근에 제한을 둔 것으로, △△△ 내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처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블로그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비공개 처분을 해제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블로그의 불법복제물이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종합하면, 게시물의 공개 상태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34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5번~81번은 6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50개 게시물임. (순번 36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500원에 소장 가능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B, C, A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5번~8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82번~61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54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게임, 만화,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터널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8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이터널스'를 300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11. 3.에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이며, 전체 분량인 약 138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 중임. 티빙, 웨이브 등 OTT 플랫폼

에 유료 가입하면 시청 가능하며,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10,900원에 구매 가능함.

(게임 '로도스도 전기 - 디드리트 인 원더 라비린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0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로도스도 전기 - 디드리트 인 원더 라비린스'를 3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12. 16.에 발매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으로,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약 38,000원에 판매 중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82번~614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2번~61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3971호(순번 1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3973호~3975호(순번 3번~5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3972호(순번 2번), 안전번호 제2022-3976호~4584호(순번 6번~64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

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16쪽부터 2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630호~2035호(순번 1번~406번)의 구글 검색 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2. 11.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